대구광역시 달성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869

제출일자 : 2026. 8. 21.
제 출 자 : 달성군수

1. 제안이유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관광기념품 제공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관광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달성 길라잡이”를 “달성군 관광해설사”로 명칭을 변경함.
(안 제2조제5호, 제4조제4호, 제13조제4호,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나. 휴양 콘도미니엄업 관련 정의 및 등록 기준 조항을 삭제함.
(안 제2조제9호, 제35조)

다.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기념품 등의 제공 근거 규정을 신설함.
(안 제5조의2)

라. 달성군 관광해설사 운영 관련 표식 발급 규정을 정비함.
(안 제19조제1항)

마. 셔틀버스 이용자 준수사항 중 지방자치단체 면책 규정을 삭제함.
(안 제25조)

바. 기타 오탈자 및 미비 사항 정비함.(안 제4조, 제18조제2항, 제41조제2항)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1)「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

(2)「지방자치법」 제28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2) 입법예고(2026. 7. 20. ~ 2026. 8. 10.) 결과 : 의견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특이사항 없음

(5) 부패영향평가 : 특이사항 없음

(6) 부서합의 : 해당사항 없음

(7)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달성 길라잡이”를 “달성군 관광해설사”로 하며, 같은 조 제9호를 삭제한다

제4조의 제목 “(군수의 책무)”를 “(관광진흥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달성 길라잡이”를 “달성군 관광해설사”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 (관광기념품 등의 제공) ① 군수는 관광객 유치와 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관광기념품, 관광홍보물품, 지역상품권 등 유가증권, 관광서비스·체험 및 그 결과물 등(이하 “관광기념품 등”이라 한다)을 제공할 수 있다.

1. 관광설명회, 박람회, 팸투어, 온라인 이벤트 등 관광 홍보 활동에 참여한 자
2. 달성투어버스, 스탬프투어, 워케이션, 개별 관광객 인센티브 지원 사업 등 각종 관광 활성화 사업에 참여한 자
3. 군이 주관·주최·후원하는 축제, 이벤트, 체험 행사 등 관광 행사에 참여한 자
4. 관광 콘텐츠 공모전 및 각종 설문 조사 등 관광 행정에 참여한 자
5. 그 밖에 군수가 관광객 유치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장의 제목 중 “달성 길라잡이”를 “달성군 관광해설사”로 한다.

제13조제4호 중 “문화관광해설사”를 “달성군 관광해설사”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및 제17조의 제목 중 “달성 길라잡이”를 각각 “달성군 관광해설사”로 한다.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달성 길라잡이”를 각각 “달성군 관광해설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장지”를 “관광지”로, “주차료 면제”를 “주차료를 면제”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달성 길라잡이”를 “달성군 관광해설사”로, “발급해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식의 규격, 기재사항 등 표식의 발급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달성 길라잡이”를 “달성군 관광해설사”로, “문화관광해설사”를 “달성군 관광해설사”로 한다.

제20조 중 “달성 길라잡이”를 “달성군 관광해설사”로 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제7장의 제목 “관광사업의 등록 및 관광활성화 자문위원회”를 “관광활성화 자문위원회”로 한다.

제35조를 삭제한다.

제41조제2항 중 “출석의원”을 “출석위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4. (생 략) 5. “달성 길라잡이”란 군의 주요 관광지, 문화유적지, 축제, 문화행사 등에서 이용객의 편의제공 및 시설 등의 문화해설을 하는 자원봉사자를 말한다. 6. ~ 8. (생 략) 9. “휴양 콘도미니엄업”이란 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현행과 같음) 5. “달성군 관광해설사”----------. 6. ~ 8. (현행과 같음) <삭 제>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관광 여건 조성과 관광사업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 1. ~ 3. (생 략) 4. 달성 길라잡이 양성 및 운영사업	제4조(관광진흥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 ----------. 1. ~ 3. (현행과 같음) 4. 달성군 관광해설사 ----------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조의2(관광기념품 등의 제공) ① 군수는 관광객 유치와 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관광기념품, 관광홍보물품, 지역상품권 등 유가증권, 관광서비스·체험 및 그 결과물 등(이하 “관광기념품 등”이라 한다)을 제공할 수 있다. 1. 관광설명회, 박람회, 팸투어, 온라인 이벤트 등 관광 홍보 활동에 참여한 자 2. 달성투어버스, 스탬프투어, 워케이션, 개별 관광객 인센티브 지원 사업 등 각종 관광 활성화 사업에 참여한 자 3. 군이 주관·주최·후원하는 축제, 이벤트, 체험 행사 등 관광 행사에 참여한 자 4. 관광 콘텐츠 공모전 및 각종 설문조사 등 관광 행정에 참여한 자 5. 그 밖에 군수가 관광객 유치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 행	개 정 안
제4장 관광안내소의 설치 및 달성길라잡이의 운영	제4장 ----------달성군 관광해설사------
제13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광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1. ~3. (생 략) 4. 관광종사원과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양성 및 운영 5. ~ 8. (생 략)	제13조(업무의 위탁)---------- ---------- ---------- ---------- ---------- ---------. 1. ~3. (현행과 같음) 4. ---------- 달성군 관광해설사 교육, 양성 및 운영 5. ~ 8. (현행과 같음)
제16조(달성 길라잡이의 운영) 군수는 중요 관광지 및 축제 기간, 문화행사 기간 등에 달성 길라잡이를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달성군 관광해설사------) ---------- ----------달성군 관광해설사----------.
제17조(달성 길라잡이의 직무) ① ~ ④ (생 략)	제17조(달성군 관광해설사------) ① ~ ④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18조(활동비 지급 등) ① 달성 길라잡이가 문화관광해설 관련 활동을 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활동비 지급 등) ① 달성군 관광해설사----------.
② 군수는 직무의 수행을 위해 입장이 필요한 달성 길라잡이에게 관내 관장지의 입장료와 주차료 면제할 수 있다.	② ----------달성군 관광해설사---------관광지----------주차료를 면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표식) ① 군수는 달성 길라잡이에게 제17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표식을 발급해야 한다.	제19조(표식) ① ------- 달성군 관광해설사----------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식의 규격, 기재사항 등 표식의 발급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달성 길라잡이가 제17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제1항의 표식을 소지하고 문화관광해설사의 신분을 알려야 한다.	② 달성군 관광해설사----------달성군 관광해설사----------.

현 행	개 정 안
제20조(포상) 군수는 문화관광 해설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달성 길라잡이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	제20조(포상) ----------달성군관광해설사----------.
제25조(셔틀버스 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셔틀버스를 이용하기 전에 이용안내 및 안내수칙을 충분히 습득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군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삭 제>
제7장 관광사업의 등록 및 관광활성화 자문위원회	제7장 관광활성화 자문위원회
제35조(휴양 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 별표 1 제3호 가목 (2)항의 위임에 따라 취사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는 객실의 범위를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삭 제>
제41조(회의 등) ① (생 략)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1조(회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관 계 법 령

□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제5조 관련)

1. ~ 2. (생 략)

3. 휴양콘도미니엄업

가. 객실

(1) (생 략)

(2) 관광객의 취사·체류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다만,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 있으면 그 비율을 말한다)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